직무발명규정

제정 2005.03.01.
개정 2013.12.06.
개정 2023.03.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근무하는 교수, 조교 및 직원(이하 “교·직원”이라 한다)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무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며 지적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·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12.6.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직무발명”이라 함은 교·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며,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. 또한 본 대학의 교·직원, 외래교원, 초빙교원, 연구원, 학생 등이 본 대학의 연구비 및 본 대학의 외부지원 자금으로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할 결과 창작한 발명도 직무발명으로 본다.
2. “발명자”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교·직원을 말한다.
3. “외부발명자”라 함은 교·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교·직원 이외의 자를 말한다.
4. “지적재산권”이라 함은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의장권, 상표권)으로 정의한다.

제3조(권리의 승계) ① 본 대학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발명의 지적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을 승계한다. 다만 외부발명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직무발명의 경우에는 교·직원이 가지는 권리와 지분만을 승계한다.

② 외부발명자가 그 권리를 총장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그 권리의 지분도 승계할 수 있다.

③ 본 대학이 원할 경우 발명자에게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.

제4조(발명의 신고) ① 교·직원이 발명을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서장을 거쳐 산학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23. 3. 16.>

1. 발명신고서 (별지 제1호 서식)
2. 발명의 내용 설명서(별지 제2호 서식)

② 제1항의 신고를 받으면 산학취업처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연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23. 3. 16.>

제5조(승계의 결정 및 통지) ① 산학취업처장은 연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에 의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23. 3. 16.>

② 산학취업처장은 제1항의 결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23. 3. 16.>

제6조(권리의 양도)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별지 제3호의 증서에 의해 본 대학에 양도하여야 한다.

제7조(출원) 산학취업처장은 제6조의 양도증서를 받은 즉시 본 대학 명의로 지적재산권출원을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23. 3. 16.>

제8조(특허출원 비용)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 심사, 심판 및 소송, 기타 처분 또는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대학이 전액 부담한다.

제9조(발명자의 특허출원) 발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0조(보상금의 지급) 본 대학은 지적재산권의 양도,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의 허락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수입의 50%는 본 대학으로, 40%는 발명자에게, 10%는 발명자 소속 학과에 지급한다.

제11조(발명자의 지분)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또는 외부발명자가 있을 경우에 발명자는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산학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개정 2013. 9. 30, 2023. 3. 16.>

② 제1항의 제출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(퇴직 및 사망 시의 보상) ① 발명자가 퇴직 및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 시 지급될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.

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
제13조(협력의무)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 심사, 심판 및 소송 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
제14조(비밀의 유지)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자유발명) 직무발명 이외의 것으로서 교·직원이 한 발명의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본 대학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승계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고 그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